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 1206 호 2019. 12. 3.(화)

선	기 관 의 장
람	

공 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9-1282호[울산광역시 북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안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전주 수요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 → 구정소식 → 알림마당 → 북구공보
--------	---

회 람								
--------	--	--	--	--	--	--	--	--

발행 :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 기획홍보실 (☎241-7125, 행정7125)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19-1282호

울산광역시 복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복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3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제정이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복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 강화를 통한 지정제 실효성을 제고하고, 장기요양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및 질적 수준을 담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제정 목적, 설치,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4조)
- 나. 위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7조)
- 다.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1조)
- 라.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3. 관계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4. 의견제출

이 규칙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23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사회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htkdal98@korea.kr

2)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북구청)

3) 팩스 : (052)241-766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 사회복지과(전화:052-241-766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울산광역시 북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안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울산광역시 복구 규칙 제 호

울산광역시 복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복구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울산광역시 복구청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의 제7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복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울산광역시 복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에 관하여 심사한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으로 정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촉 위원의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울산광역시 복구 소속의 관계 공무원 1명
2.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 직원
3.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복구 관내 노인·사회복지단체(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대표
5. 해당 지역 장기요양기관 이용자·보호자 대표 등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기요양 지정 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경우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신청자인 경우
3. 위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사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에 대한 심사업무 수행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비밀 등을 누설한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회의의 고지) 위원장은 사전에 위원들이 해당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을 통보하고 회의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회의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장기요양기관의 적합 심사를 할 때에는 각 위원의 [별표 1]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에 따른 총 심사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이면 적합 결정하고, 80점 미만이면 부적합 결정한다.

③ 심사안건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구분하여 결정한다.

1. 적합

2. 부적합: 부적합 사유 제시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사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당해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심사결과에 따라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할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10조(의견 진술 등) 위원장은 의안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신청 기관 관계자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2019년 12월 12일 전에 종전의 제23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2.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목적으로 2019년 12월 12일 전에 「노인복지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및 같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경우
3.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목적으로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 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2019년 12월 12일 전에 「건축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

[별표 1]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제9조제2항 관련)

시설 및 인력 기준 충족여부	<input type="checkbox"/>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의 시설 및 인력기준 적합여부(※ 부적합 시 별도의 심사 없이 부적합 결정)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	---	---

항목	세부 기준 및 배점(안)	점수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 의 서비스 제공 능력 (50점)	심사자료 : 행정처분 내용 및 급여제공 이력 등	
	<input type="checkbox"/> 대표자(법인) 또는 장기요양요원의 행정제재 처분이력 : 부당청구, 노인학대, 재무회계규칙 위반(예·결산 미승인 등), 평가·조사 거부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	
	<p style="text-align: center;"><행정처분 경중에 따른 감점 기준></p> <p>① 대표자(법인) 또는 장기요양요원의 기관 행정제재 처분 이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정지일이 총(누적) 180일 이상인 경우(지정취소, 폐쇄명령 포함) 또는 노인학대, 평가조사 거부에 따른 행정처분 발생 시 : 감점 20점 - 업무정지일이 총 91일~180인 경우 : 감점 15점 - 업무정지일이 총 31~90일 이하인 경우 : 감점 10점 - 업무정지일이 총 30일 이하인 경우 : 감점 5점 <p style="text-align: center;">※ 위 감점기준은 6년 이내 업무정지 일수의 합으로 산출</p> <p>② 장기요양요원의 행정처분 이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여제공제한 처분이 6개월인 경우 : 종사자 인당 감점 5점 △ 급여제공제한 처분이 1년인 경우 : 종사자 인당 감점 10점 	
	<input type="checkbox"/> 급여제공 이력 : 장기요양기관은 운영하려는 자의 잦은 휴폐업사유가 행정제재처분 또는 평가 회피로 추정되는 경우 (ex. 현지조사 실시 직후 부당청구 사실이 적발되었으나 폐업 또는 매매 등을 통해 처분을 회피한 경우)	
<p style="text-align: center;"><급여제공 이력 감점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폐업 이력이 3번 이상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 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 감점 20점 △ 휴폐업 이력이 2번 이상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 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 감점 15점 △ 휴폐업 이력이 1번 이상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 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 감점 10점 		
	<input type="checkbox"/> 설치 기관의 운영이념, 사업목표 등의 공익성 <input type="checkbox"/> 대표자 또는 시설장의 요양, 의료 등 노인복지 관련 서비스 제공 관련 전문성 <input type="checkbox"/> 대표자의 이전 기관 평가결과 등	
서비스 제공 계획의	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	

<p>총실성 및 적절성 (15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등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적정하게 마련되었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급여제공지침 및 운영규정 관련 직원 교육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이용자 고충처리계획 마련 여부 	
<p>자원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5점)</p>	<p>심사자료 : 사업계획, 시설현황 등</p>	
<p>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p>	<p>심사자료 : 사업계획, 인력현황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운영위원회 구성이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구성되었으며, 개최 및 활용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사업 계획에 따라 예산을 수립하였는지 여부 및 재무회계규칙 위반 사항이 있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 서비스자원 연계계획 <input type="checkbox"/> 지역사회자원 활용 및 교류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계획이 마련되었는지 여부(ex. 자원봉사자 활용 계획, 보호자 또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행사 개최 계획 등) <input type="checkbox"/> 시설 설치 부채비율 준수 등 재무상태가 건전하여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 가능한지 여부(차입금 사전신고서 상 부채상환 계획의 적정성, 등기부등본, 자산현황서 등 관련 서류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근로계약서에 필수사항 포함 여부 및 요양보호사와 월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장기요양요원의 4대 보험, 상해보험, 배상책임 보험가입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퇴직급여 제도 운영계획이 근로자 퇴직급여지급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마련되었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포상, 휴가 제도 등)를 마련하였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시설장 및 종사자 채용 절차의 투명성 확보 계획 (ex. 공개모집 여부 등) <input type="checkbox"/> 장기요양요원 추가 배치 등 인력 확보 계획 <input type="checkbox"/> 직원의 건강검진, 근골격계 질환 검사(연 1회 이상) 및 조치계획 등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계획마련 여부 <input type="checkbox"/> 직원 의견 및 고충 처리절차 마련 여부 등 	
<p>※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위원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p>		

총 심사점수: _____ 점

20 년 월 일

심사위원 소속: 직위: 성명: (인)

입 법 예 고 사 항 에 대 한 의 견 서

자치법규명 : 울산광역시 북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제 출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